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42
------	-----

제출년월일 : 2009년 1월 21일
제출자: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도서관, 평생학습관의 지역적·기관별 특색을 반영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강습·교육 참여자 중 저소득자, 장애인, 노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수강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2. 근거

- 「도서관법」 제33조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3. 주요내용

- 가.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의 대출정지 기간을 1인당 1년 이내로 명시함.(안 제2조의2 제2항)
- 나.관장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다. 강습·교육 참여자 중 저소득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노인 등의 수강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생략
- 나. 예산조치 :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음
- 다. 협의 : 해당 없음
- 라. 기타

- 1)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08. 8. 3 - 9. 1(20일간)
- 나) 제출의견 : 없음
- 3) 규제심사 : 관련부서 협의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규제신설 : 없음
 - 규제강화 : 없음
 - 규제폐지 : 없음
 - 규제완화 : 없음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항중 “대출정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를 “1인당 대출정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6조의2를 제7조로 하고 제8조와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무료 프로그램 운영) 관장은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설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수강료 감면) ①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자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강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4. 만 60세 이상의 자
 5.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교육감은 전항에 의한 대상자별 수강료 감면 비율을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수강료 감면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를 제10조로 한다

별표3의 구분란 중 “제6조의2”를 “제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2 (연체료) ① (생략)</p> <p>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책당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일시 정지하되, <u>대출정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u></p>	<p>제2조2 (연체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1인당 대출정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u></p>
<p>제6조2 (사용료 등의 반환)(생략)</p> <p><신설></p>	<p>제7조 (사용료 등의 반환)(현행과 같음)</p> <p>제8조 (무료프로그램 운영) 관장은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설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p>
<p><신설></p>	<p>제9조 (수강료 감면) ① 제2조제1항 제3호에 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강료를 감면 할 수 있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p>

현행	개정안
	<p>2.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p> <p>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p> <p>4. 만 60세 이상의 자</p> <p>5.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② 교육감은 전항에 의한 대상자별 수강료 감면 비율을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수강료 감면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p>
제7조 (시행규칙) (생략)	제10조 (시행규칙) (현행과 같음)